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검 토 보 고</u>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1-99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11월 17일(수)

2. 제출사유

구민에게 일상적인 체력증진 목적의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선수인력을 통한 전문 체육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조례의 입법목적 명확화(안 제1조)

다. "체육"활동의 범위 명확화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라.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규정 정비(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8. 12. ~ 9. 1.(제출된 의견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기존의 생활체육 분야를 넘어 체육 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명 변경 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지난 2016년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주로 생활체육 분야의 육성과 지원에 국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체육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는 최근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그에 필요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안 제1조(목적)는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조의 명칭을 "생활체육의 육성"에서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으로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지원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 특히, 제9호를 신설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 체육인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검토결과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남이 없고 각 개정 조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국민체육진흥법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검 토 보 고</u>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1-132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11월 17일(수)

2. 제출사유

새로 조성되는 망원 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을 구립 체육시설 항목으로 추가하고 동 시설의 개인 사용료 등의 범위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립 체육시설 항목 신설(안 별표 1)

나. 개인사용료의 범위 신설(안 별표 2)

다. 전용사용료의 범위 신설(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10. 15. ~ 11.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올 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망원동 소재 "망원 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을 구립 체육시설 항목에 편입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범위를 정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항목에 "망원 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을 추가하고.
- 조례의 별표 2 "개인 사용료의 범위"에 동 시설 사용료의 범위를 10,000원 ~ 18,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책정된 사용료의 범위는 동종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망원 나들목 테니스장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고 2021년 9월 30일 개최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정한 사용료 책정이라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함께 개정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동 시설의 주간 사용 요금기준을 10,000으로 정하고 있음(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 테니스 장의 주간 사용요금은 12,000원임)
- 또한, 조례의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 역시 인근 시설과 같은 수 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적정한 사용료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사료됨.